

## 【 10 】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출연월일 : 1999. 1. 22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### 제안이유

-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수행을 위한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가. 하수도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,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수입으로 함 (안 제2조)
- 나.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, 차입금이자 및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함 (안 제3조)
- 다.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함 (안 제4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##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 공공하수도(이하 “하수도”라 한다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양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 부담금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.

제3조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,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,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4조(독립채산 원칙)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준용규정)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第20條 (占用許可) 公共下水道에 影響을 미치는 다른 施設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.

제21조 (사용료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전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전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改正 82·12·31>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規定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.

④ 削除 <93·12·10>

(전문개정 73·2·3)

第21條의2 (資料의 提出命令등) 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使用料 또는 占用料등을 算定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使用者 또는 占用者에 대하여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使用者 또는 占用者의 關係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(本條新設 97·3·7)

第22條 (사용의 制限등) 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의 施行이나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排水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의 區域을 指定하여 당해 公共下水道의 使用을 一時 制限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使用을 制限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區域 및 期間을 미리 公告하거나 이를 關係인에게 通告하여야 한다.

第23條 (他人의 土地에의 出入등) ① 公共下水道管理廳 또는 그 命令에 의하여나 委任을 받은 者는 公共下水道에 관한 調査·測量·工事 또는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특별한 用途가 없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·通路 또는 假道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竹林 기타의 障礙物(이하 "障礙物등"이라 한다)을 除去하거나 變換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 占有者에게 通告하여야 하며,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거나 障礙物등을 除去 또는 變換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通告하고 그 意見을 들어